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 1 장 총 칙 1. 목 적 이 지침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 접근권한의 오·남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·노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주체 등의 권리를 보호하러는데 목적이 있음.	제 1 장 총 칙 1. 목 적 이 지침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 접근권한의 오·남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·노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주체 등의 권리를 보호하러는데 목적이 있다. ※ 개정사유: 문장 종결 표현을 규정 문체에 맞게 정비
2.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.	2.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. ※ 개정사유: 문장 종결 표현을 규정 문체에 맞게 정비
3. 관련 근거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나.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-4호) 다.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6호)	3. 관련 근거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나.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-4호) 다.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-9호, 2026.7.1. 시행) ※ 개정사유: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번호 및 시행일 반영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
4. 용어 정의 가. ~자. (생략) <신 설>		4. 용어 정의 가. ~자.(현행과 동일) 차. “안전한 인증수단”이란 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(OTP) 등 아이디·비밀번호 외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말한다. ※ 개정사유: 추가 인증 적용을 위한 용어의 의미 명확화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3 장 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관리절차 1. 접근권한 부여 원칙 및 기준 가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, 개인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.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</th><th>내용</th><th>유지보수 업체</th></tr><tr><td>1</td><td>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</td><td>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</td><td>혁신정보시스템</td></tr><tr><td>2</td><td>주차관리 시스템</td><td>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</td><td>성북구도시관리공단</td></tr></table>		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성북구도시관리공단	제 3 장 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관리절차 1. 접근권한 부여 원칙 및 기준 가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, 개인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.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</th><th>내용</th><th>유지보수 업체</th></tr><tr><td>1</td><td>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</td><td>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</td><td>혁신정보시스템</td></tr><tr><td>2</td><td>주차관리 시스템</td><td>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</td><td>세인소프트</td></tr></table> ※ 개정사유: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현행화		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세인소프트
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																							
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																							
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성북구도시관리공단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																							
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																							
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세인소프트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책임자는 [별표 제1호]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 차등 및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		라. 책임자는 [별표 제1호]에 따라 이용자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권한 차등 및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 ※ 개정사유: 이용자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권한 차등부여 기준 명확화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마.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(서비스이용자는 제외한다)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·보안토큰·일회용 비밀번호(OTP)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 ※ 개정사유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추가 인증수단 적용 근거 마련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제 4장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기준, 공유금지, 부여·말소 절차 1.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기준 가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, 개인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.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</th><th>내용</th><th>유지보수 업체</th></tr><tr><td>1</td><td>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</td><td>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</td><td>혁신정보시스템</td></tr><tr><td>2</td><td>주차관리 시스템</td><td>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</td><td>성북구도시관리공단</td></tr></table>	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성북구도시관리공단	제 4장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기준, 공유금지, 부여·말소 절차 1.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기준 가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, 개인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.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</th><th>내용</th><th>유지보수 업체</th></tr><tr><td>1</td><td>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</td><td>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</td><td>혁신정보시스템</td></tr><tr><td>2</td><td>주차관리 시스템</td><td>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</td><td>세인소프트</td></tr></table> ※ 개정사유: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현행화	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세인소프트
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																					
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																					
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성북구도시관리공단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	내용	유지보수 업체																						
1	문화·체육 회원관리 시스템	문화체육 회원관리프로그램	혁신정보시스템																						
2	주차관리 시스템	주차 및 견인 관련 프로그램	세인소프트																						
라. 책임자는 [별표 제1호]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 차등 및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	라. 책임자는 [별표 제1호]에 따라 이용자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권한 차등 및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 ※ 개정사유: 이용자별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권한 차등부여 기준 명확화																								
제 5 장 사용자 권한관리의 안전성·보안성 확보 2. 접근권한 점검 및 관리 가. ~ 나. (생략)	제 5 장 사용자 권한관리의 안전성·보안성 확보 2. 접근권한 점검 및 관리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권한관리 책임자는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험도·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권한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점검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※ 개정사유: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의 정기 점검 주기와 예외 절차 명확화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5. 보안조치 가. ~ 다. (생략)	5. 보안조치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공단은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마. 공단은 개인정보를 출력·복사하는 경우 출력·복사물에 대한 관리(관리대장 작성, 마스킹, 수량 제한 등)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※ 개정사유 ○ 반복적인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등 계정 보호조치 근거 마련 ○ 개인정보 출력·복사물의 관리 및 보유기간 경과·목적 달성 후 파기 기준 마련
6. 준용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」을 준용한다.	6. 준용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」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을 준용한다. ※ 개정사유 :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용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기준 명확화
[별지 제1호 서식] ~[별지 제3호 서식] (생략) 〈신 설〉	[별지 제4호 서식] 개인정보취급자·시스템관리자 보안 서약서 ※ 개정사유 : 개인정보취급자 및 시스템관리자의 보안 준수사항과 책임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 신설

